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 조문별 제정 이유서

---

2016. 12.



행정자치부



# 조문별 제정이유서

## 1. 법률의 목적(안 제1조)

### 가. 제·개정 이유

-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CCTV’라 함)의 지능화, 스마트폰 및 스마트 가전의 발전,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기와 서비스의 출현 등 영상정보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정보의 사회적 유용성 증대
  -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있어서 CCTV가 범죄 행위 입증 및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
- \* ‘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15년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15년 크림빵 뺑소니 사건 등
- 한편 사회 전반의 CCTV 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드론,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도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
  - \* 본 이유서 중 ‘블랙박스’라는 용어는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를 말함.
  - \*\* 2014년말 현재 CCTV 795만여대, 블랙박스 643만여대 설치(2015 정보화통계집)
  - \*\*\*수도권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노출건수 평균 83차례(파이낸셜뉴스, 2015.2월)
- 부적절한 CCTV 관리 및 운영, 스마트폰·블랙박스 등을 통한 무분별한 영상촬영과 유튜브·SNS 공개 등으로 개인영상정보 오남용 및 유출 위험
- 반면 현행 법 체제는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CCTV에 한하여 규율하고 있어, 모든 형태의 영상정보기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고 스마트폰, 블랙박스,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규율 범위에서 제외
- 영상정보처리기기 특성상 촬영 범위에 포함된 개인영상이 동의 없이 무차별 수집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식별성 및 사생활 침해 우려는 매우 높아 일반 개인정보와는 다른 독립된 규율 체계 필요

## 나. 제·개정 내용

### □ 법률 목적

-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통해서 헌법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 판례(2005.7.21., 2003헌마282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법 체계를 마련하여 다른 개별법이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해소함
- 「영유아 보육법」, 「주차장법」 등 약 20여개의 개별법에 CCTV 설치·운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이나 구체적인 안전조치 사항 등은 미비

## □ 법률 제명

- 국민에게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사 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법률 제명의 통일성을 유지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일부 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 국민, 기업 등의 법적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호 기준과 방법 등을 별도 규율하는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라. 입법효과

-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장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목적을 위해 카메라 감시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한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적절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있다.

1 § Syftet med lagen är att tillgodose behovet av kameraövervakning för berättigade ändamål samtidigt som enskilda skyddas mot otillbörliga intrång i den personliga integriteten

## 2. 용어 정의 (안 제2조)

### 가. 제·개정 이유

- 이 법의 보호 대상과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영상정보주체’, ‘개인영상정보처리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통합관제’ 등 주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함

### 나. 제·개정 내용

#### □ 개인영상정보(제1호)

- 영상 그 자체를 통해 육안 또는 직관적으로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영상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초상, 신체적 특징, 행동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개인영상정보’라고 정의

<참고 : 다른 법률에서의 용어 사용례 >

법령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p><b>제2조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p>

-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된 영상(사진, 동영상 등) 중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영상의 형태가 아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법률간 혼선 예방
- \* (예) 얼굴, 자동차번호, 신체특성, 배경·장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 영상정보주체(제2호)**

- “영상정보주체”란 영상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해 다른 정보주체와 구별되거나 특정인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자를 의미
  - 특정 개인과 직접 관련성을 가지는 사물이 해당 영상에 존재하는 경우로서 그 사물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사물과 관련된 개인이 영상정보주체에 해당함
- ※ 영상에 얼굴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얼굴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착용하고 있는 의상이나 배경 등을 통해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에 해당

**<참고 : 다른 법률에서의 용어 사용례 >**

법령	내용
<p>개인정보 보호법</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p>

<p>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p>

### □ 개인영상정보처리자(제3호)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
  - 점포 또는 사무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이 법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함
  - 다만, 업무 목적과 관계없는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 등 사적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제외됨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 ▶ ‘업무’는 업무가 주된 것 또는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직업 또는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의미함

- ▶ 또한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 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16-01-01호, 2016.1.11.)

- ▶ 개인이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위하여 본인의 집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영상정보처리기기(제4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특정 장소에 고정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 뿐 아니라 교통수단에 부착하여 내·외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 등 이동 가능한 형태의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블랙박스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해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하여 운영 하는 기기</li> <li>▶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 사람의 신체에 착용·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여 운영 하는 기기</li> <li>▶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용형 : 스마트 안경·시계, 웨어러블 등</li> <li>- 휴대형 : 스마트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li> <li>- 부착형 : 블랙박스, 주차단속 카메라, 드론 등</li> </ul> </li> </ul>

□ 영상정보 통합관제(제5호)

-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 기기 또는 하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 및 통제하는 경우를 ‘영상정보 통합관제’라고 정의함

※ 예) 영상정보 통합관제의 예시

- ▶ 학교가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영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제센터가 통합하여 관제(기기의 설치·운영자 : 학교/ 통합관제를 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단속,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영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관제
- 하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단일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용어의 준용(제2항)

- 제1항에서 규정된 용어 등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된 용어의 예에 따름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준용하는 용어 정의 예시
  - 처리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업무 목적’에 대한 법원 판례가 너무 광범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자가 사적 취미를 위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법적 의무를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음
-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친목도모 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생활과 관련한 영상정보의 처리는 이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27조제2항에 반영

## 라. 입법효과

- 이 법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2조 동 법에서 아래 단어 및 표현은 아래의 정의대로 사용된다.

2 § I denna lag används följande ord och uttryck med nedan angivna betydelse.

감시 카메라 : 현장에서 제어되지 않고 개인의 감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TV 카메라, 기타 광학 전자 기기 및 유사 장비뿐 아니라 개인 감시를 위해 해당 전자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을 청취 또는 기록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 기기.

Övervakningskameror : TV-kameror, andra optisk-elektroniska instrument och därmed jämförbara utrustningar som är uppsatta så att de, utan att manövreras på platsen, kan användas för personövervakning samt separate tekniska anordningar för avlyssning eller upptagning av ljud vilka i samband med användning av sådan utrustning används för personövervakning.

처리 : 기록, 조직, 저장, 처리 또는 변경, 사용, 전송에 의한 공개, 유통 또는 기타 공급, 취합이나 결합, 소거 또는 삭제와 같이 자동 여부에 관계없이 카메라 감시와 함께 시각 및 음향 자료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

Behandling : Varje åtgärd eller serie av åtgärder som vid kameraövervakning vidtas i fråga om bild- och ljudmaterial, vare sig det sker på automatisk väg eller inte, t.ex. upptagning, organisering, lagring, bearbetning eller ändring, användning, utlämnande genom översändande, spridning eller annat tillhandahållande, sammanställning eller samkörning, utplåning eller förstöring.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rt. 2. Pour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loi, on entend par :

4. “감시카메라“란 제1호에서 제3호에 설치된 것으로서, 사람·자산

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새 지방자치단체법」 제135조의 소란행위를 예방하고 발견할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영상을 수집, 처리 또는 저장하는 모든 고정 또는 이동 가능한 감독시스템을 의미한다.

4. caméra de surveillance : tout système d'observation fixe ou mobile dont le but est de prévenir, de constater ou de déceler les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ou les biens ou les nuisances au sens de l'article 135 de la nouvelle loi communale, ou de maintenir l'ordre public, et qui, à cet effet, collecte, traite ou sauvegarde des images; est réputée mobile, la caméra de surveillance qui est déplacée au cours de l'observation afin de filmer à partir de différents lieux ou positions;

5. “개인정보처리자”란 단독 또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사인 및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5. responsable du traitement : la personne physique ou morale, l'association de fait ou l'administration publique qui, seule ou conjointement avec d'autres, détermine les finalités et les moyens du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 호주 : 감시장비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7)

4. 정의 (1) 동 법률에서

4 Definitions (1) In this Act:

“보디캠(body-worn video)”이란 시각적 이미지나 소리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녹화할 수 있는 장비로서 경찰공무원이 착용한 장비를 의미한다.

body-worn video means equipment worn on the person of a police officer that is capable of recording visual images or sound or both.

“광학 감시 장치(optical surveillance device)”란 특정 활동을 시각

적으로 기록하거나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시각 장애인이 해당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경, 콘택트 렌즈 또는 유사 장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optical surveillance device means any device capable of being used to record visually or observe an activity, but does not include spectacles, contact lenses or

### 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기기의 유형이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적 사항을 선언함
- 국제적 기준인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반영

#### < OECD 개인정보 보호 8원칙 >

- OECD는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한 지침”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이 국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 8가지를 제시
- ①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 개인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적법하며 정당한 수단으로 수집되어야 함,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에 대하여 알리거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해야 함
- ② 정보 질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 개인정보는 이용하려는 목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정확한 최신의 정보여야 함
- ③ 목적 명확성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에는 구체화되어야 하며, 수집된 이후에는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함

- ④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로 공개(제공) 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됨
- ⑤ **보안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 개인정보는 분실, 권한없는 접근, 파괴, 이용, 수정 또는 공개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⑥ **공개 원칙(Openness Principle)** :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하며, 개인정보의 존재 및 성격, 이용 목적, 개인정보처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함
- ⑦ **개인 참여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과 쉽게 알 수 있는 형식으로 개인정보처리자와 연락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열람과 연락이 거부되는 경우 그 이유를 제공받아야 함, 또한 개인정보의 삭제, 수정, 보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⑧ **책임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 개인정보처리자는 상기의 원칙을 준수해야함

## 나. 제 · 개정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소수집 원칙, 목적 외 활용 원칙 금지, 정확성 및 완전성 보장 의무 등 규정을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있어서 준용하도록 함

### 영상정보의 변형 또는 훼손 금지(제2항)

- 영상정보는 증거자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영상정보의 원본을 심각하게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함

□ 근로 등 일상생활에 부당한 관여 목적 금지(제3항)

- 개인영상정보는 식별성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여타 개인정보에 비하여 높으므로, 정당한 관리·감독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에 부당하게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서는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은 선언적 규범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 주고, 정책담당자에게는 정책수립 및 법집행 기준을 제시해 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입법 공백을 예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4조 ① 개인정보 처리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Art. 4. § 1. Persoonsgegevens dienen :

1.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함
1. eerlijk en rechtmatig te worden verwerkt;
2. 구체적·명시적·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됨
2. voor welbepaalde, uitdrukkelijk omschreven en gerechtvaardigde doeleinden te worden verkregen en niet verder te worden verwerkt op een wijze die, rekening houdend met alle relevante factoren, met name met de redelijke verwachtingen van de betrokkene en met de toepasselijke wettelijke en reglementaire bepalingen, onverenigbaar is met die doeleinden. Onder de voorwaarden vastgesteld door de Koning na advies van de Commissie voor de bescherming van de persoonlijke levenssfeer, wordt verdere verwerking van de gegevens voor historische, statistische of wetenschappelijke doeleinden niet als onverenigbaar beschouwd;
3. 수집 목적에 적절하고 관련성을 가져야 함
3. toereikend, terzake dienend en niet overmatig te zijn, uitgaande van de doeleinden waarvoor zij worden verkregen of waarvoor zij verder worden verwerkt;
4.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4. nauwkeurig te zijn en, zo nodig, te worden bijgewerkt; alle redelijke maatregelen dienen te worden getroffen om de gegevens die, uitgaande van de doeleinden waarvoor zij worden verkregen of waarvoor zij verder worden verwerkt, onnauwkeurig of onvolledig zijn, uit te wissen of te verbeteren;
5. 수집 목적에 필요한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됨, 다

만 역사, 통계 및 과학적 목적으로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5. in een vorm die het mogelijk maakt de betrokkenen te identificeren, niet langer te worden bewaard dan voor de verwezenlijking van de doeleinden waarvoor zij worden verkregen of verder worden verwerkt, noodzakelijk is. De Koning voorziet, na advies van de Commissie voor de bescherming van de persoonlijke levenssfeer, in passende waarborgen voor persoonsgegevens die, langer dan hiervoor bepaald, voor historische, statistische of wetenschappelijke doeleinden worden bewaard.

#### 4. 국가 등의 책무(안 제4조)

##### 가. 제·개정 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전반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원칙을 준수토록 함

##### 나. 제·개정 내용

###### 시책 수립 및 시행(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조치(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시 이 법 목적에 부합(제3항)

- 이 법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새로운 법제도를 제·개정하거나 기존의 법제도를 해석 또는 적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기능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전반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제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환경을 마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 법과 그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규정함

###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 부여(제1항)

- 다른 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을 준수토록 함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기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지위를 이 법에 부여함으로써 입법 공백 해소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 부여(제2항)

- 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반면,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법률간 충돌을 방지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법률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다른 법률과의 중복 규제 우려를 예방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6조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법(1998:204)를 대신하여 적용한다.

6 § Lagen gäller i stället för personuppgiftslagen (1998:204)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4조 감시카메라의 설치·이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1992.12.8.)이 적용된다.

Art. 4. La loi du 8 décembre 1992 est applicable sauf dans les cas où la présente loi contient expressément une disposition contraire.

##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안 제6조)

### 가. 제·개정 이유

- 범죄예방·수사 등에 있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 블랙박스, 웨어러블, IoT 등 새로운 IT 기기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1인 미디어 출현 등으로 영상정보 수집·활용이 생활 전반에 일상화 되고 있음
- 그러나, 공개 장소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는 불특정 개인의 초상·행동 등이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높고, 그 영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오남용 가능성이 크므로 설치목적, 운영방법 등에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

### 나. 제·개정 내용

#### 규율 대상 : ‘누구든지’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공 및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설치·운영과 관련한 규율대상을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로 함

#### 적용 범위 : 고정형, 이동형 등 모든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고 이동형 기기는 별도로 규율하지 않음

- 그러나, 최근에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증가하고, 이러한 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이 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 하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기준(제1항)**

- 일정한 장소를 지속 촬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가 자동 수집되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
  - 따라서 범죄예방 등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엄격히 제한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이 허용되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광장,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함.

- 특정한 사람들 또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된 장소의 예시

- ▶ 도로, 공원,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영화관, 박물관 등 시설
- ▶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 개별 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무인감시카메라, 무인카메라, 감시 설비 등)의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운영이 가능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 사례>

관련 법령	내 용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제15조의4)
「아동복지법」	▶ 도시공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유치원 등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제32조제3항)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4조제2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제6조제1항제11호)

「주택법 시행규칙」	▶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24조의2)
「외국인보호규칙」	▶ 외국인보호시설의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대책 확보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7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별표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제여객선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항만시설 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별표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실험실 및 보관시설의 감시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별표 4)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중앙방재실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추어야 함(제12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 ‘범죄’는 각 개별 법률상의 위무 위반자에 대하여 형벌(징역, 금고, 벌금, 자격정지 등)이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질서위반행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범죄’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각종 경범죄(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암표매매 등)도 포함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단순한 과태료 부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

※ 예시

- ▶ 우범지역의 도로나 골목길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 백화점, 편의점 등이 방범 및 도난방지용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 각종 재해·재난, 인위적 훼손, 방화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문화재, 사유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됨(해당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안전도 포함)
-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범위를 보호대상 시설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넓게 설정하거나, 특정 시설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해당 시설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아님

**※ 예시**

- ▶ 지하철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 문화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호)

- 각종 차량 및 사람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됨

**※ 예시**

- ▶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5호)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특정 도로 구간에서의 교통 상황,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됨

- 다만, 교통상황에 관한 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초상이나 차량번호 등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의 해상도를 낮추거나 비식별 조치 등 보호조치가 필요함

**※ 예시**

- ▶ 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의 통행량을 수집·분석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6호)
- 최근 비식별 조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상정보 수집시 해당 영상 정보에 포함된 개인의 초상 등을 실시간으로 제거한 후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해짐
- 이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과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의 엄격한 심의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개인영상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그 외의 영상(배경,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량 등)은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제2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업무목적 외 개인의 일상생활(기념사진, 사고, SNS 등)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규제를 강화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새로운 IT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설치 목적 제한 등 사전적 규제는 하지 아니하되, 민법 또는 형법 등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초상권, 명예권 등)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시에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규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허가 및 허가취소(제3항, 제4항)**

- 제1항제6호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촬영 목적 및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함
- 또한 행정자치부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허가한 경우에도 허가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 등으로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p><b>&lt;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li> <li>2. 고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의 제한 또는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개인영상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4. 새로운 기술의 발전 또는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으로 영상정보주체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

**□ 목욕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의 설치·운영 금지(제5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제6항 전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의 은밀한 신체가 노출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됨(단, 짐질방 휴게실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하다 보기 어려움)

**※ 참고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 ▶(법 제11조제1항제1호) 설비 기준 위반시 공중위생영업소 폐쇄
- ▶(시행규칙 제2조) 설비 기준은 별표1과 같음
- ▶(시행규칙 별표1)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해야 함

○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제6항 단서)

-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목욕실, 화장실 안에서의 자해·자살, 탈출, 폭력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목욕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운영을 제한하고 권한없는 제3자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되는 시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절차(제6항)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의 공익 목적으로 도로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넓은 지역에서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방대한 영상정보를 수집·보관하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관계인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의견수렴 개요 >

- ▶ 의견수렴 시점 : 신규 설치·운영시, 기존 설치·운영 목적 변경·추가시
- ▶ 의견수렴 대상 :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지역 주민 등)
  - ※ 단, 제5항 단서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종사자, 해당 시설에서 구금·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의견 수렴 필요
- ▶ 의견수렴 방법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

## □ 제1항제6호에 따른 허가 관련 세부항을 대통령령에 위임(제7항)

- 제1항제6호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가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 주관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정보 수집관련 법규 개선 의견 제시('16.11월)
  - 민간기업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개발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영상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구

### 라. 입법효과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도시철도법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 도시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도시철도운영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

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8조 일반인이 접근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카메라 감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10조~15조에 명시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제12조~15조에 명시되는 카메라 감시는 신고 후 허가된다.

8 § Tillstånd till kameraövervakning krävs för att en övervakningskamera ska få vara uppsatt så att den kan riktas mot en plats dit allmänheten har tillträde. Tillstånd behövs dock inte i fall som avses i 10-15 §§. Kameraövervakning som avses i 12-15 §§ är tillåten efter anmälan

제16조 카메라 감시 허가 신청은 8조에 따라 감시가 수행되는 지역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메라 감시가 수행되는 경우, 허가 신청서는 주요 감시가 수행되는 지역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감시가 수행되는 지역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는 감시가 수행되는 여러 지역 행정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한다.

16 § En ansökan om tillstånd till kameraövervakning enligt 8 § ska göras skriftligen hos länsstyrelsen i det län där övervakningen ska ske.

Om kameraövervakning ska ske i flera län med en övervakningskamera som är uppsatt på eller i ett fordon, fartyg eller luftfartyg, ska ansökan om tillstånd göras hos länsstyrelsen i det län där

övervakningen huvudsakligen ska ske. Om det inte går att avgöra i vilket län övervakningen huvudsakligen ska ske, ska ansökan göras hos länsstyrelsen i något av de berörda länen.

제28조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감시에 따른 영상 및 음향 자료를 그 자료가 수집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처리할 수 없다.

28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får inte behandla bild- och ljudmaterial från övervakningen för något ändamål som är oförenligt med det som materialet samlades in för.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Art. 5. § 1. La décision d'installer une ou plusieurs caméras de surveillance dans un lieu ouvert est prise par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② 제1항의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결정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La décision visée au § 1er est prise après avis positif du conseil communal de la commune où se situe le lieu. Le conseil communal rend son avis après avoir consulté préalablement le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결정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후에 통지를 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의 형태 및 내용, 서식을 제출하는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서식에서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이용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장소의 입구에 그림문자를 부착하여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국왕(Roi)은 그림문자의 모양 및 그림문자에 포함할 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영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감시카메라가 해당 장소를 향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notifie la décision visée au § 1er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Il le fait au plus tard la veille du jour de la mise en service de la ou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Le Roi définit,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a forme et le contenu du formulaire standard qui est rempli à cette occasion ainsi que les modalités de transmission de ce formulaire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ouvert. Dans ce formulaire,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tteste que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envisagée de la caméra ou des caméras sont conformes aux principes de la loi du 8 décembre 1992.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ppose à l'entrée du lieu ouvert, un pictogramme signalant l'existence d'une surveillance par caméra. Après avoir pris l'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e Roi détermine le modèle de ce pictogramme et les informations qui doivent y figurer.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s'assure que la ou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ne sont pas dirigées spécifiquement vers un lieu pour lequel il ne traite pas lui-même les données, sauf accord exprès du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le lieu en question.

④ 실시간 영상관제는 오직 법규위반, 피해, 소란행위가가 발생한 경우, 경찰위원회의 지도하에 이들 사건에 즉시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관제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칙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영상관제자는 경찰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 칙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칙령 초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란행위에 대한 증거 및 법규위반 또는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만 가능하며, 영상을 통해 가해자, 공공질서 문란 행위자, 목격자 또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만일 이들 영상이 범죄, 피해 또

는 소란행위에 대한 증거를 구성할 수 없거나, 영상을 통해 가해자, 공공질서 문란 행위자, 목격자 또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영상을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없다.

§ 4. Le visionnage de ces images en temps réel n'est admis que sous le contrôle des services de police et dans le but de permettre aux services compétents d'intervenir immédiatement en cas d'infraction, de dommage, de nuisance ou d'atteinte à l'ordre public et de guider au mieux ces services dans leur intervention. Un arrêté royal délibéré en Conseil des ministres, dont le projet est soumis pour avis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détermine les conditions auxquell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être habilitées à pratiquer le visionnage doivent satisfaire. Il désigne ces personnes, qui agissent sous le contrôle des services de police. L'enregistrement d'images n'est autorisé que dans le but de réunir la preuve de nuisances ou de faits constitutifs d'infraction ou générateurs de dommages, de rechercher et d'identifier les auteurs des faits, les perturbateurs de l'ordre public,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Si ces images ne peuvent contribuer à apporter la preuve d'une infraction, d'un dommage ou d'une nuisance ou ne peuvent permettre d'identifier un auteur, un perturbateur de l'ordre public, un témoin ou une victime, elles ne peuvent être conservées plus d'un mois.

##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안 제7조)

### 가. 제 · 개정 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 · 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 근거와 목적,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 접근권한, 필수 보호조치 등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방침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조직 구성원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그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토록 함

## 나. 제·개정 내용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제1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음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5.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6.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작성지침 마련 및 권고(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작성을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자율에만 맡길 경우 내용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 본 방침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보관장소, 안전조치 방법 등 보안요소 포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내부 구성원 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 할 실익이 낮다는 의견이 다수

## 라. 입법효과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과 안전한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내부방침을 마련하여 그 내용을 조직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생략)

## 8. 영상정보처리기의 목적 외 운영 등 제한(안 제8조)

### 가. 제·개정 이유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는 일정한 장소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게 되므로, 만일 해당 기기를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음성·음향을 상시적으로 녹음하는 경우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외 이용과 녹음을 엄격히 제한하되 본인이 직접 요구한 경우나 범죄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나. 제·개정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외 이용 금지(제1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는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설치·운영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행위이므로 단순한 위협 우려나 정황만 있는 상황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며,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 합리적으로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적 외 이용을 하는 경우는 제8조 위반에 해당하며,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 >**

1. 영상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녹음 기능 사용 금지(제2항)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최근에는 비명소리 등 위급상황을 자동 감지하여 관제요원에게 경보음 등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입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범죄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참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녹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	해당 조항
▶ 「형사소송법」	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24조(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칙 제13조의8(영상녹화)
▶ 「군 검찰사건사무규칙」	규칙 제20조(영상녹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	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칙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	법 제81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칙 제113조(전자장비의 종류)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11조 (폐쇄회로 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한 상시 녹음을 허용하거나 녹음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
  - 급박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상시 녹음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이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할 여지를 차단

#### 라. 입법효과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외 이용과 녹음을 엄격히 제한하되 범죄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

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8(영상녹화)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 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 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 영상녹화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 제12조

음향 도청 또는 기록은 음향 도청 또는 기록용 장치가 범죄 혐의로 인하여 작동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Avlyssning eller upptagning av ljud får ske endast sedan en anordning för avlyssning eller upptagning av ljud aktiverats på grund av misstanke om brott.

제28조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감시에 따른 영상 및 음향 자료를 그 자료가 수집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처리할 수 없다.

28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får inte behandla bild- och ljudmaterial från övervakningen för något ändamål som är oförenligt med det som materialet samlades in för.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안 제9조)

### 가. 제·개정 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보다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외부의 제3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나. 제·개정 내용

- 명문화된 문서에 의한 위탁(제1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수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도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문서에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그 부속물의 단순 설치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위탁 관련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제2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위·수탁자간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업무위탁은 현대 사회의 분업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 등의 자유로운 업무위탁을 보장하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안전조치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

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는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30조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 영상 및 음향 자료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아래 각 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안전도를 달성해야 한다.

1. 기존의 기술 가능성
2. 대책을 실행하는 비용
3. 자료 처리에 수반되는 특정 위험
4. 자료의 민감성.

30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ska vidta lämpliga tekniska och organisatoriska åtgärder för att skydda det upptagna bild- och ljudmaterialet. Åtgärderna ska åstadkomma en säkerhetsnivå som är lämplig med beaktande av

1. de tekniska möjligheter som finns,
2. vad det skulle kosta att genomföra åtgärderna,
3. de särskilda risker som finns med behandlingen av materialet, och
4. hur pass känsligt materialet är.

감시를 수행하는 자가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개인은 고용인이 안전 절차를 수행하고 절차가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Om den som bedriver övervakningen anlitar någon annan att ha hand om övervakningen ska han eller hon förvissa sig om att den som anlitas kan genomföra de säkerhetsåtgärder som ska vidtas och se till att åtgärderna verkligen vidtas.

제31조 타인을 대신하여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카메라 감시를 수행할 때 감시 담당자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31 § Den som för någon annans räkning har hand om kameraövervakning får utföra kameraövervakningen bara i enlighet med instruktioner från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카메라 감시를 담당하는 자와 카메라를 감시를 대행하는 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계약은 특히 감시를 수행하는 자가 카메라 감시를 수행할 경우에는 카메라 감시 담당자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제30조, 첫 번째 단락에 기술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Det ska finnas ett skriftligt avtal mellan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och den som har hand om övervakningen för hans eller hennes räkning. I avtalet ska det särskilt föreskrivas att den som har hand om övervakningen får utföra kameraövervakningen bara i enlighet med instruktioner från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och att han eller hon är skyldig att vidta de åtgärder som anges i 30 § första stycket.

쟁점이 되는 공공 업무에 있어 첫 번째 단락에 부여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법률이나 기타 조항을 통해 특정 규정이 마련될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Om det i lag eller annan författning finns särskilda bestämmelser om behandling av personuppgifter i det allmännas verksamhet i frågor som avses i första stycket, ska i stället de bestämmelserna gälla.

## 10.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안 제10조)

### 가. 제 · 개정 이유

-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 IT기기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 전반에 영상정보의 이용 · 활용이 널리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 개인영상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국민 편익이 저해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원칙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현실적인 개인영상정보 처리 관행을 고려하여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예외 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수집·이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함

## 나. 제·개정 내용

###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제1항)

-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할 경우 외형상으로는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상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워지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사회안전망 약화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이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은 국제적인 원칙·기준과 국내의 관련 법령 및 사회적 통념에 기반하여, 적절한 보호와 안전한 이용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이에,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요건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그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3자 제공을 허용함
  - 그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3자 제공을 제한

**<EU 규정과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요건 비교>**

<p align="center"><b>EU GDPR 7조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b></p>	<p align="center"><b>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 제10조</b></p>
(a)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경우	▶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b)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 또는 계약 체결 이전 정보주체의 요구를 조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4호)
(c)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2호)
(d)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e) 공공이익 보호 또는 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공적권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p>▶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p> <p>▶ 제6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의 당초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p>
(f)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만,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권과 자유가 해당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함)	<p>▶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제6호)</p> <p>▶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12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 표시 등을 통해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제8호)</p>

○ 영상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제10항제2호)>**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
2.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관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영상정보주체가 당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표시하는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이므로 향후 입증 책임을 고려하여 서명날인, 전산자료 보관,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 등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예시>**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영상정보주체에게 전달하고, 영상정보주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영상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5. 그 밖에 위에 다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1) 법률의 특별한 규정

-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또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률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됨
- 다만, 법률에는 영상정보처리기 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만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사례>

관련 법률	내용
군사법원법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구조·위치·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법령상 의무 이행

- 법령에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함.
- 법률상 의무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의무도 포함되며 법령이 아닌 고시, 내부 규정, 조례 등은 미포함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사례>

관련 법령	내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법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종합방재실의 설비 등 자.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법·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이 허용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는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이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도로교통법」 등 소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

○ 영상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4호)

- 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가 결혼식 기념사진 촬영을 계약하거나, 모델 또는 연예인 지망생이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이 영상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계약 이행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

○ 영상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 가족 또는 친지 등 실종자를 찾기 위해 실종자의 사진을 포함한 전단지 배포, 사고를 당한 자를 구조하는 등과 같이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허용

○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6호)

- 백화점 매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 등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법적 권리 보호 등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촬영된 영상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 제6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의 당초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 이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이 허용된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허용

- 공개된 장소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다는 점, 해당 촬영 장소를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 모두로부터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안내판 설치를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함

○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개인 영상정보처리자가 제12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 표시 등을 통해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제8호)

-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촬영 장소나 시간 등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 수집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형태(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나 용도(업무용, 가정용, 취미용 등)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기가 지속 출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 편익이 저해되거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비현실적 규제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

- 이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영상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하되, 영상정보주체에게는 열람 및 삭제 요구권 등 사후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대하여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

□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 필수 고지사항(제2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

하여 해당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제10항제2호)>**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
2.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관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3자 제공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요구(제3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제공하는 자료부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는 특성상 사전규제가 어려우므로 사후 규제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법률전문가 등)

**라. 입법효과**

- 국제적 기준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요건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국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정립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8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몰래 카메라의 이용은 금지된다. 사전에 정보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카메라의 사용은 금지된다. 사전승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림문자가 표시된 장소에 들어

간 경우

2. 제7조의 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동 감시카메라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작동되고 있는 공공 또는 제한된 장소에 있는 경우,

Art. 8. Toute utilisation cachée de caméras de surveillance est interdite.

Est considérée comme utilisation cachée, toute 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qui n'a pas été autorisée au préalable par la personne filmée. ...

Vaut autorisation préalable :

1. le fait de pénétrer dans un lieu où un pictogramme signale l'existence d'une surveillance par caméra;
2. la présence dans un lieu ouvert ou dans un lieu fermé accessible au public où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mobiles sont utilisées de manière visible comme visé à l'article 7/1.

차량, 선박 또는 표시가 없는 항공기에 이동 감시카메라를 장착하는 경우, 카메라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야 한다.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mobiles, montées à bord de véhicules, de navires ou d'aéronefs non banalisés, sont réputées être utilisées de manière visible.

## 11.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등 제한(안 제11조)

###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영상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

## 나. 제·개정 내용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및 예외적 허용(제1항)

- 원칙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예외 인정 사유와 동일하게 하여 일관성 유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적용함)
- 영상정보주체에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분리하여 당해 영상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영상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제10항제2호)>

1.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
2.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관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 이 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음
  -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규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에서 정의된 법률간 적용 관계에 따라 해당 개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금지 및 이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함
- 영상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 영상정보처리기는 일정한 촬영 범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므로 도난, 폭행 등의 범죄 발생시에는 그 현장을 기록하여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허용함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제4호)
- 원칙적으로 개인영상정보에서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삭제하였다면 해당 영상을 통해서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으므로 개인영상정보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영상을 통해 직접 개인을 식별할 수 없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충분히 편집·가공되었다면, 그 정보는 당초의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분석기술이 개발되거나 결합 가능한 정보의 증가 등으로 당초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였던 정보를 통해서도 향후 식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재식별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되고 관리되어야 함

- 개인영상정보에서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 방법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발간 예정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소관업무 수행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 오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률적 근거와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등 개인영상정보 침해 및 오남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 국내 다른 법규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 법 제5조에서 정의한 법률간 적용 관계에 따라 해당 조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됨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는 신속한 범죄수사 및 범인검거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 발생이나 유사 피해 예방 등 공공이익 달성을 위한 목적인 바, 이 법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 법원은 촉탁, 보정명정, 자료제출 명령 등을 통해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요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재판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 형(刑), 감호(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 목적 외 이용·제공 사실 공개(제2항)

-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이 발생한 일자, 법적 근거, 제공받은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 범위 등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토록 함
- 다만, 제1항제7호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의 규정과 동일한 원칙하에 비공개 범죄수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원칙과 기준 하에 예외적 허용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간 정합성을 유지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국회의사 등에 관한 영상자료를 제작·편집하여 방송국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상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목적·용도·일시 및 형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영상자료의 편집·사용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상자료의 제공대상기관, 제공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9조. “대중이 접근가능한 제한된 장소”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 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용인만이 촬영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 사용인은 권한 없는 자가 영상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자는 영상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재량 의무를 부담하고, “대중이 접근가능한 제한된 장소” 또는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 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영상을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1. 만일 경찰 또는 사법기관이 영상이 위반 또는 소란행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영상을 통해 위반 또는 소란행위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만일 경찰이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무수행을 위해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 영상이 발견된 위반 또는 소란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을 경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이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된 장소” 에 설치·이용된 감시카메라로 수집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그의 사용인은 정보 또는 지시 확인을 위해 법원의 영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rt. 9. Seul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ce qui est des lieux fermés accessibles au public ou des lieux fermés non accessibles au public ou la personne agissant sous son autorité a accès au

x images.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ou la personne agissant sous son autorité prend toutes les mesures de précaution nécessaires pour éviter que des personnes non autorisées n'aient accès aux images. Les personnes qui ont accès aux images sont soumises au devoir de discrétion en ce qui concerne les données personnelles fournies par les images, étant entendu que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ce qui est des lieux fermés accessibles au public ou des lieux fermés non accessibles au public ou la personne agissant sous son autorité :

1. peut transmettre les images aux services de police ou aux autorités judiciaires s'il constate des faits pouvant être constitutifs d'infraction ou de nuisances et que les images peuvent contribuer à faire la preuve de ces faits ou à en identifier les auteurs;
2. doit transmettre les images aux services de police si ceux-ci les réclament dans le cadre de leurs missions de police administrative ou judiciaire et si les images concernent l'infraction ou les nuisances constatées. S'il s'agit d'un lieu fermé non accessible au public,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ou la personne agissant sous son autorité peut toutefois exiger la production d'un mandat judiciaire dans le cadre d'une information ou d'une instruction.

## 12.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 표시(안 제12조)

### 가. 제·개정 이유

- 영상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공익 달성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인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 대법원 판례 또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 하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참고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사실을 안내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 나. 제·개정 내용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수집 사실 표시 방법(제1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표시하여야 함

- 안내판은 해당 촬영 장소를 통행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그 위치와 크기, 높이 등이 적절하여야 함

※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글자 크기를 매우 작게 하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 경우는 안내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 <안내판 필수 기재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직책 또는 성명, 연락처  
(수탁업체 관리시에는 수탁업체의 책임자 직책 및 연락처도 기재)

- 다만, 군사시설 및 안보 등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영상 촬영의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군사시설의 보호 및 안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 예시>**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사실 표시 방법(제2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그 크기와 운영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고정형 기기와 같은 안내판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
  - 차량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교통단속용 카메라의 경우에는 안내판 부착이 가능하나, 사람의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형태의 소형 기기의 경우에는 그 크기로 인하여 안내판을 부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
- 따라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영상정보주체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판, 불빛, 소리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정하여 표시토록 함
  - (예) 카메라 촬영 중 LED가 점등하거나, 일정한 소리를 표출하는 방식 등
- 다만, 무인항공기(드론)를 통한 영상 촬영 등과 같이 불빛, 소리 등을 통해서도 영상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에 촬영 장소 등을 사전 게시토록 함

## □ 제조·유통·판매자의 노력 권고(제3항)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당초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불빛, 소리 등을 통한 수집 사실 표시 기능이 탑재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 기능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따라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자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수집 사실 표시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 제조·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참조 :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 내장 이동전화 촬영음 표준”  
(한국정보통신표준)

### 2. 규격

#### 2.1 촬영음 크기

- 카메라 폰의 촬영음 크기 값은 60dBA 에서 68dBA 사이로 한다.

#### 2.2 촬영음 종류

- 정지영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을 내장한 이동전화의 촬영음은 촬영종임을 알 수 있는 종류의 소리, 이를테면 ‘찰칵’ ‘하나·둘·셋’ 등이어야 한다.

#### 2.3 요구조건

- 에티켓 모드(매너 모드)에서도 촬영시 60dBA 에서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되어야 한다.
- 동영상 촬영시에는 60dBA 에서 68dBA 사이의 촬영음이 시작과 끝에 강제로 발생되어야 한다.
- 단, 피사체가 인식할 수 있는 플래쉬 등 강제발광을 하는 카메라 폰 및 화상 통화시에 대해서는 촬영음 규격 적용을 예외로 한다.
- 본 요구조건은 2004년 6월 1일 신규출시 출고 기준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 촬영기능 내장 이동전화 단말기부터 적용한다.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조·유통·판매자 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IT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의무가 아닌 권고 형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제조업체, 법률전문가 등)

- 불빛 기능 추가시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소리 기능 추가시 동영상에 원치 않는 소리가 삽입될 우려가 있음(제조업체)
-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불빛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업무 목적과 사적 목적의 촬영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시민단체 등)

## 라. 입법효과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내판, 불빛, 소리 등을 통해 표시도록 함으로써 영상정보 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6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내판 설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승객이 도시철도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위치 부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
3. 촬영 범위
4. 촬영 시간
5. 담당 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6. 그 밖에 도시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주기적인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25조 카메라 감시의 공개는 명확한 표지를 통하거나 기타 효과적인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아울러 현행 조건상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시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감시 기간 동안 음향을 도청 또는 기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특별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

공개 의무는 감시 장비가 설치될 때 발생한다.

25 § Upplysning om kameraövervakning ska lämnas genom tydlig skyltning eller på något annat verksamt sätt. Upplysning ska också lämnas om vem som bedriver övervakningen om detta inte framgår av förhållandena på platsen.

Om ljud kan avlyssnas eller tas upp vid övervakningen ska särskild upplysning lämnas om detta.

Upplysningsplikten inträder när övervakningsutrustningen sätts upp.

####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5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결정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후에 통지를 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의 형태 및 내용, 서식을 제출하는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서식에서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이용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장소의 입구에 그림문자를 부착하여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국왕(Roi)은 그림문자의 모양 및 그림문자에 포함할 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감시카메라가 해당 장소를 향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 5. § 3.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notifie la décision visée au § 1er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Il le fait au plus tard la veille du jour de la mise en service de la ou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Le Roi définit,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a forme et le contenu du formulaire standard qui est rempli à cette occasion ainsi que les modalités de transmission de ce formulaire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ouvert. Dans ce formulaire,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tteste que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envisagée de la caméra ou des caméras sont conformes aux principes de la loi du 8 décembre 1992.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ppose à l'entrée du lieu ouvert, un pictogramme signalant l'existence d'une surveillance par caméra. Après avoir pris l'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e Roi détermine le modèle de ce pictogramme et les informations qui doivent y figurer.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s'assure que la ou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ne sont pas dirigées spécifiquement vers un lieu pour lequel il ne traite pas lui-même les données, sauf accord exprès du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le lieu en question.

### 13.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한(안 제13조)

#### 가. 제·개정 이유

- 최근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들조차 각종 업무를 외부 전문기업 등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율함

####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도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탁 관련 문서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제1항)

**< 위탁 관련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9조제1항)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은 자(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제2항)
-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제3항)
-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명문화된 위탁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제4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제5항)
-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수탁자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직원으로 본다는 것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위탁자)가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대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임(제5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업무위탁은 현대 사회의 분업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임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 등의 자유로운 업무위탁을 보장하는 한편,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과 안전조치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

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30조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 영상 및 음향 자료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아래 각 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안전도를 달성해야 한다.

1. 기존의 기술 가능성
2. 대책을 실행하는 비용
3. 자료 처리에 수반되는 특정 위험
4. 자료의 민감성.

감시를 수행하는 자가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개인은 고용인이 안전 절차를 수행하고 절차가 수행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0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ska vidta lämpliga tekniska och organisatoriska åtgärder för att skydda det upptagna bild- och ljudmaterialet. Åtgärderna ska åstadkomma en säkerhetsnivå som är lämplig med beaktande av

1. de tekniska möjligheter som finns,
2. vad det skulle kosta att genomföra åtgärderna,
3. de särskilda risker som finns med behandlingen av materialet, och
4. hur pass känsligt materialet är.

Om den som bedriver övervakningen anlitar någon annan att ha hand om övervakningen ska han eller hon förvissa sig om att den som anlitas kan genomföra de säkerhetsåtgärder som ska vidtas och se till att åtgärderna verkligen vidtas.

## 14. 개인영상정보처리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14조)

### 가. 제 · 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는 초상이나 행동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권한 없는 제3자가 접근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자료의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함

### 나. 제 · 개정 내용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는 암호화 · 보안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와 잠금장치 · 접근통제 등 물리적 조치, 책임자 지정 및 교육 · 접근기록 관리 등 관리적 조치가 있으며, 그 밖에도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내부관리 체계\* 마련 등이 있음

\* ‘내부관리 체계’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기계적 장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의미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안전성확보 조치 의무화를 통해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예방 등에 기여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30조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 영상 및 음향 자료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아래 각 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안전도를 달성해야 한다.

1. 기존의 기술 가능성
2. 대책을 실행하는 비용
3. 자료 처리에 수반되는 특정 위험
4. 자료의 민감성.

감시를 수행하는 자가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개인은 고용인이 안전 절차를 수행하고 절차가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0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ska vidta lämpliga tekniska och organisatoriska åtgärder för att skydda det upptagna bild- och ljudmaterialet. Åtgärderna ska åstadkomma en säkerhetsnivå som är lämplig med beaktande av

1. de tekniska möjligheter som finns,
2. vad det skulle kosta att genomföra åtgärderna,
3. de särskilda risker som finns med behandlingen av materialet, och
4. hur pass känsligt materialet är.

Om den som bedriver övervakningen anlitar någon annan att ha hand om övervakningen ska han eller hon förvissa sig om att den som anlitas kan genomföra de säkerhetsåtgärder som ska vidtas och se till att åtgärderna verkligen vidtas.

## 15. 보호책임자의 지정(안 제15조)

### 가. 제 · 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특정 담당자를 지정 · 운영토록 함으로써 관련 법 규정 준수, 유출 및 오남용 예방 등 자율적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 나. 제 · 개정 내용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지만,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 법인, 단체, 개인사업체 등의 대표자를 보호책임자로 간주하여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함(제1항)

-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기타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함(제2항)
- 또한,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직 내의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련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조사 또는 보고를 통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함(제3항~제4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보호책임자 지정을 통해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인 개인 영상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촉진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17조 카메라 감시 허가 신청은 8조에 따라 아래 각 호에 관한 정보 및 설명을 포함한다.

1.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와 허가 보유자를 대신하여 감시를 담당하는 자
2. 카메라 감시의 목적
3. 사용되는 장비 형식
4. 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와 감시 구역
5. 신청서 처리에 중요한 기타 상황.

감시가 작업장에 적용될 경우에는 안전 책임자나 안전 위원회, 직원을 대변하는 조직의 진술서를 신청서에 동봉한다.

17 § En ansökan om tillstånd till kameraövervakning enligt 8 § ska innehålla uppgift om och beskrivning av

1. den som ska bedriva kameraövervakningen och i förekommande fall den som ska ha hand om övervakningen för tillsåndshavarens räkning,
2. ändamålen med kameraövervakningen,
3. den utrustning som ska användas,
4. den plats där utrustningen ska placeras och det område som kan övervakas, och
5. de omständigheter i övrigt som är av betydelse för prövningen av ärendet.

Om övervakningen avser en arbetsplats, ska ett yttrande från skyddsombudet, skyddskommittén eller en organisation som företräder de anställda på arbetsplatsen lämnas in tillsammans med ansökan.

## 1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점검(안 제16조)

### 가. 제·개정 이유

- '14년말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795만대가 공공 및 민간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 이 법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단속 및 처벌 보다는 개인영상정보 처리자 스스로 자율적인 법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 노력이 긴요함

### 나. 제·개정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권고하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년 1회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토록 함(제1항)

\* '12년부터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CCTV 현황 등록 시행 중

- 민간사업자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규모 이상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토록 함(제2항)

**< 점검 및 신고 대상 민간사업자(안) >**

1. 100대 이상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일정규모 이상 지하상가, 터미널, 도서관, 의료기관, 영화관, 학원, 공연장, 대규모 점포 등을 말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이 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및 신고 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체점검 방법 및 내용, 신고 요령, 지원체계 등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모든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이 규정에 따른 자체점검 및 신고 대상자 포함)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통하여 개인영상 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자율적 노력을 권고(제4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민간 시설과 생활근거지가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규율이 필요 (법률전문가 등)
- ⇒ 운영현황 점검대상(안)에 민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를 포함

**라. 입법효과**

-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이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벨기에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결정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결정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통지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후에 통지를 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의 형태 및 내용, 서식을 제출하는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서식에서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이용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장소의 입구에 그림문자를 부착하여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국왕(Roi)은 그림문자의 모양 및 그림문자에 포함할 정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감시카메라가 해당 장소를 향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실시간 영상관제는 오직 법규위반, 피해, 소란행위가가 발생한 경우, 경찰위원회의 지도하에 이들 사건에 즉시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관제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칙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영상관제자는 경찰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경우 칙령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칙령초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란행위에 대한 증거 및 법규위반 또는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만 가능하며, 영상을 통해 가해자, 공공질서 문란 행위자, 목격자 또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만일 이들 영상이 범죄, 피해 또는 소란행위에 대

한 증거를 구성할 수 없거나, 영상을 통해 가해자, 공공질서 문란 행위자, 목격자 또는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영상을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없다.

Art. 5.

§ 1. La décision d'installer une ou plusieurs caméras de surveillance dans un lieu ouvert est prise par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 2. La décision visée au § 1er est prise après avis positif du conseil communal de la commune où se situe le lieu. Le conseil communal rend son avis après avoir consulté préalablement le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 3.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notifie la décision visée au § 1er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Il le fait au plus tard la veille du jour de la mise en service de la ou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Le Roi définit, après 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a forme et le contenu du formulaire standard qui est rempli à cette occasion ainsi que les modalités de transmission de ce formulaire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et au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ouvert. Dans ce formulaire,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tteste que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envisagée de la caméra ou des caméras sont conformes aux principes de la loi du 8 décembre 1992.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appose à l'entrée du lieu ouvert, un pictogramme signalant l'existence d'une surveillance par caméra. Après avoir pris l'avis de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le Roi détermine le modèle de ce pictogramme et les informations qui doivent y figurer. Le responsable du traitement s'assure que la ou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ne sont pas dirigées spécifiquement vers un lieu pour lequel il ne traite pas lui-même les données, sauf accord exprès du responsable du traitement pour le lieu en question.

§ 4. Le visionnage de ces images en temps réel n'est admis que sous le contrôle des services de police et dans le but de permettre aux services compétents d'intervenir immédiatement en cas d'infraction, de dommage, de nuisance ou d'atteinte à l'ordre public et de guider au mieux ces services dans leur intervention. Un arrêté royal délibéré en Conseil des ministres, dont le projet est soumis pour avis à la Commission de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détermine les conditions auxquell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être habilitées à pratiquer le visionnage doivent satisfaire. Il désigne ces personnes, qui agissent sous le contrôle des services de police. L'enregistrement d'images n'est autorisé que dans le but de réunir la preuve de nuisances ou de faits constitutifs d'infraction ou de dommages, de rechercher et d'identifier les auteurs des faits, les perturbateurs de l'ordre public, les témoins ou les victimes. Si ces images ne peuvent contribuer à apporter la preuve d'une infraction, d'un dommage ou d'une nuisance ou ne peuvent permettre d'identifier un auteur, un perturbateur de l'ordre public, un témoin ou une victime, elles ne peuvent être conservées plus d'un mois.

## 17.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안 제17조)

###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

\* '16년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90개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중

## 나. 제·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통합관제센터’로 정의함(제1항)
  - \* ‘영상정보 통합관제’란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설치·운영하거나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함(법안 제2조제1항제5호 참조)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기 신고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제2항)
- 통합관제센터 종사자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제하여야 하므로, 일반 개인 영상정보처리자 보다 더욱 엄격한 법적 의무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의 목적 외 관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조항에 따른 보다 엄격한 의무를 적용(제3항)
-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관업무와 관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업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인력 및 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원하도록 함(제4항)
  - 관제인력 파견 절차 및 예산분담 등을 공식화하여 경찰청 등에서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된 인력은 센터의 관리책임자 지휘 통제 하에 소관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업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관제센터 종사자의 근무 수칙, 보안대책 등 기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5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통합관제센터 법제화에 따른 구축·운영 확대 및 오남용 우려 제기 (일부 시민단체)
  -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하는 국민의 개인영상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목적 외 관제금지 등 각종 의무사항을 명문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예산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 호소 (지방자치단체)
  - 통합관제센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영상정보처리 기기 외에도 경찰청, 교육청, 소방서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통합적으로 관제되는 바, 관련 기관 간 인력 및 예산 분담 근거를 마련

#### 라. 입법효과

-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시 신고, 목적외 관제 금지, 종사자 근무 수칙 마련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순기능을 극대화
  - 다양한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리함에 따른 오남용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영상 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영국 감시카메라 관리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3.4.2. 시스템이 공동 소유되거나 공동 운영되는 경우, 확실한 의무와 요구 및 당사자간의 상이점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해결 절차와 함께 협력자 각각의 기관이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자간에 관리 및 책임방식에 대한 합의와 문서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4.2 Where a system is jointly owned or jointly operated, th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arrangements should be agreed between the partners and documented so that each of the partner organisations has clear responsibilities, with clarity over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resolution of any differences between the parties or changes of circumstance.

3.4.3.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예방과 적발을 위한 목적과 교통 관리를 위한 목적을 들 수 있다. 개별 목적에 대한 설명책임은 시스템 조작자의 관리 구조 부류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개별 목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효과적인 공동 수행, 검토 및 감사, 의사결정과 대중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 방식을 위한 좋은 관례가 된다.

3.4.3 A surveillance camera system may be used for more than one purpose. For example, one purpose might be crime prevention and detection, and another traffic management. Accountability for each purpose may rest within different elements of a system operator's management structure. Should that be the case, then it is good practice for the governance arrangements to include those accountable for each purpose and facilitate effective joint working, review and audit, decision making and public engagement.

## 18. 개인영상정보 영향평가(안 제18조)

### 가. 제·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방법의 적정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 나. 제·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영상 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위험요인 등을 사전 개선토록 함(제1항)
  -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수행
- \* ‘16년 11월 기준 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18개 업체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영향평가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육성, 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제4항)
-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도 다양한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통합관제 운영으로 인해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제6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영향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개인영상 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영국 감시카메라 관리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3.2.4. 이 원칙은 시스템의 목적과 시스템이 정당하게 유지되는지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 고려되었는지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개발과 검토가 이루어질 때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행 필요성을 시사한다. 가장 영향을 받게 될 부분에 대한 협의와 사생활에 끼칠 영향 평가 및 적합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과정을 따를 때, 이 과정들은 사생활에 대한 불균형적인 간섭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이루어진 이행과 필요한 수단의 올바른 결정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관계 당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또한 유럽인권보호조약 제8조를 고려한 개입의 필요성과 확장 두 가지 모두를 보여준다.

3.2.4 This principle points to the need for a privacy impact assessment process to be undertaken whenever the development or review of a surveillance camera system is being considered to ensure that the purpose of the system is and remains justifiable, there is consultation with those most likely to be affected, and the impact on their privacy is assessed and any appropriate safeguards can be put in place. Where such an assessment follows a formal and documented process, such processes help to ensure that sound decisions are reached on implementation and on any necessary measures to safeguard against disproportionate interference with privacy. In the case of a public authority, this also demonstrates that both the necessity and extent of any interference with Article 8 rights has been considered.

3.2.5. 개인정보영향평가는 또한 1998년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와 관련된 포괄적

인 지침은 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구할 수 있다. 이것은 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맞게 적합하고 균형적인 평가 과정을 고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3.2.5 A privacy impact assessment also helps assure 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the 1998 Act. Comprehensive guidance on undertaking a privacy impact assessment is available from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This encourages organisations to devise and implement an assessment process that is appropriate and proportionate to their circumstances.

## 19. 통합관제센터 종사자 관리(안 제19조)

### 가. 제·개정 이유

-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목적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정함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 등을 말함

### 나. 제·개정 내용

-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제한능력자 및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범죄경력자 등을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종사자 근무수칙, 보안대책 등 필요한 교육을 연간 일정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제2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일부 시민단체에서 성 범죄 경력자를 통합관제센터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성범죄자 또한 범죄경력자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다수

## 라. 입법효과

-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침해 위험을 낮추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편익 발생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28조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감시에 따른 영상 및 음향 자료를 자료가 수집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처리할 수 없다.

28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en får inte behandla bild- och ljudmaterial från övervakningen för något ändamål som är oförenligt med det som materialet samlades in för.

제29조 카메라 감시에 따른 영상 및 음향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감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

29 § Tillgång till bild- och ljudmaterial från kameraövervakning får inte ges till fler personer än vad som behövs för att övervakningen ska kunna bedrivas.

제30조 카메라 감시를 수행하는 자는 수집 영상 및 음향 자료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아래 각 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안전도를 달성해야 한다.

1. 기존의 기술 가능성
2. 대책을 실행하는 비용
3. 자료 처리에 수반되는 특정 위험
4. 자료의 민감성.

감시를 수행하는 자가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개인은 고용인이 안전 절차를 수행하고 절차가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0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ska vidta lämpliga tekniska och organisatoriska åtgärder för att skydda det upptagna bild- och ljudmaterialet. Åtgärderna ska åstadkomma en säkerhetsnivå som är lämplig med beaktande av

1. de tekniska möjligheter som finns,
2. vad det skulle kosta att genomföra åtgärderna,
3. de särskilda risker som finns med behandlingen av materialet, och
4. hur pass känsligt materialet är.

Om den som bedriver övervakningen anlitar någon annan at

t ha hand om övervakningen ska han eller hon förvissa sig om att den som anlitas kan genomföra de säkerhetsåtgärder som ska vidtas och se till att åtgärderna verkligen vidtas.

제37조 카메라 감시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통제하는 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특정 개인의 상황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허가 없이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공활동에서는 정보의 공개 접근 및 기밀유지법(2009:400)의 규정을 적용한다.

37 § Den som tar befattning med en uppgift som har inhämtats genom kameraövervakning får inte obehörigen röja eller utnyttja det som han eller hon på detta sätt har fått veta om någon enskilds personliga förhållanden. I det allmännas verksamhet ska i stället bestämmelserna i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en (2009:400) tillämpas.

## 20. 통합관제센터의 실태조사(안 제20조)

### 가. 제·개정 이유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운영절차를 보급할 필요

### 나. 제·개정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함(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자 및 관계 단체(수탁업체 포함)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정기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에 기여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스웨덴 카메라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43조 제39조 및 40조에 언급되는 감독기관은 감독을 위해 관제실 및 감시센터의 기타 구역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경찰청은 본 기관이 접근권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하는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카메라 감시를 담당하는 자, 또는 감시를 대행하는 자는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인계한다.

감독 기관은 저장 영상이나 음성 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검토할 권리가 있다.

43 § De tillsynsmyndigheter som avses i 39 och 40 §§ har rätt att för tillsynen få tillträde till kontrollrum och andra delar av en övervakningsanläggning. Polismyndigheten är skyldig att på begäran lämna den handräckning som dessa myndigheter behöver för att få tillträde.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eller den som för någon annans räkning har hand om övervakningen, ska lämna de upplysningar som tillsynsmyndigheten begär. Tillsynsmyndigheten har rätt att få tillgång till och att granska bevarat bild- eller ljudmaterial.

## 21. 개인영상정보처리의 열람 등(안 제21조)

### 가. 제·개정 이유

- 영상정보주체 등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또는 자신과 관계된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열람등 조치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

### 나. 제·개정 내용

- 영상정보주체 또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제1항)

\* 본인 또는 본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물건 등이 영상정보에 포함되어있어 해당 영상정보를 열람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를 말함(물품을 분실한 사람, 주차중 파손된 차량 소유주 등)

- 영상정보주체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도 ‘영상정보주체등’에 포함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과태료를 부과(제38조제3항 참조)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주체등의 요구를 제한 및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열람등 조치를 하도록 함(제2항)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권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당해 열람등 조치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자이크 처리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제3항)
-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를 받은 경우로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열람 요구권자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구체화

#### 라. 입법효과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해당 정보주체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피해자 등)로 확대하고,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열람청구권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편익 발생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벨기에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12조 영상정보주체는 누구든지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0조에 따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rt. 12. Toute personne filmée a un droit d'accès aux images. Elle adresse à cet effet une demande motivée au responsable du traitement, conformément aux articles 10 et suivants de la loi du 8 décembre 1992.

2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요구 등(안 제22조)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한 영상정보주체등이 추후 그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만료 등으로 자동 삭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는 저장용량 한계로 인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영상을 자동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출처를 확인한 영상정보주체등이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제1항)

\*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대부분 30일 보관 후 삭제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요구를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조사하여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주체등에게 보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항~제3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영상정보는 각종 증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높은 반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화

#### 라. 입법효과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요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상정보주체등의 권익을 보장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32조(영상녹화물 보관)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 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①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3.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안 제23조)

### 가. 제·개정 이유

- 영상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영상의 삭제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제22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을 요구한 정보주체등이 더 이상 보관 요구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

###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영상정보는 기기를 통해 촬영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영상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획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사후적으로라도 영상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본조에서 규정함(제1항)
-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 (예) 원거리 촬영으로 본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 개인영상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본조의 삭제요구권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이하에 따른 삭제 요구에 비해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 권익보호의 범위가 더 넓음
  -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처리하는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정보에 한정되나 이 법은 공공기관 또는 기타 사업자가 처리하는 영상정보까지 요구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정보통신망법 vs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간 삭제요구권 비교>

구 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2)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제24조)
매 체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온라인)	① 온/오프라인 모두
요 건	② <u>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u>	② <u>자신의 의사에 반하여</u>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권리주체	③ 침해를 받은 자	③ 영상정보주체
의무주체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
요청사항	⑤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 삭제·임시조치 등	⑤ 영상의 삭제, 처리 정지 또는 비식별 조치
조정기능	⑥ 명예훼손분쟁조정부(정보관련 분쟁의 조정업무)	⑥ 삭제요청 거부시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영상정보주체등의 요구에 따라 보관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당해 영상정보주체등이 삭제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3항)
-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그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공공기관의 법령상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4항)
  - 특히,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영상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영상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등 조치의 거절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등 요구를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조사하여 삭제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삭제 등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항~제6항)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영상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었으나, 요구 대상을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 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라. 입법효과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영상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은 개인 영상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영상정보 주체의 권익 보장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24.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24조)

###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보관, 삭제 요구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및 비용부담 문제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제·개정 내용

-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위임장 등의 문서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제1항)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명확화(제2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제3항)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시 이에 포함하여 공개 가능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요구\*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구(제4항)
  - \* 열람, 출처확인, 사본교부, 보관, 삭제, 처리정지, 비식별 조치 등
  - \*\*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에서 운영 중
- 열람등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 범위에서 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제5항)
  -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산정 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비용 청구는 별도의 자재가 소요되거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비용부담을 하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함

#### 라. 입법효과

-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영상정보주체의 편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비수준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시하여 권리행사 남발이나 과도한 비용부담 요구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영국 감시카메라 관리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3.3.7. 시스템 관리자는 감시카메라 시스템 사용에 대해 개인과 기관이 가진 우려와 불평사항을 다루는 효과적인 절차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진정절차에 관한 정보는 대중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항의가 접수되고 항의자가 처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처음 항의가 접수 될 때 관여했던 담당자가 아닌 자를 활용하는 내부감사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항의사항은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처리되어야 하고 불평사항 처리에 얼마나 걸릴 것인지 처음에 알려주어야 한다.

3.3.7 A system operator should have an effective procedure for handling concerns and complaints from individuals and organisations about the use of surveillance camera systems. Information about complaints procedures should be made readily available to the public. Where a complaint is made and the complainant not satisfied with the response there should be an internal review mechanism in place using a person not involved in handling the initial complaint. Complaints must be handled in a timely fashion and complainants given an indication of how long a complaint may take to handle at the outset.

3.3.8. 항의사항에 대해 결론이 나면 정보공개위원회나 수사권재판소 등 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규제 기관의 정보가 항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3.8 Once a complaint has been conclude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complainant about any regulatory bodies who may have jurisdiction in that case such as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r the 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 25.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안 제25조)

###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이력을 작성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영상정보 처리를 유도하고 추후 책임 추적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둘 것을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시 책임 추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사항으로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처리 이력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문제 발생시 책임 추적이 가능토록 함
  - 영상정보를 저장·관리하는 PC 등에 로그기록 생성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대장 작성 등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구현 가능

#### < 처리 이력 관리 예시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법을 통해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함.

1.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및 내용
2.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한 자의 직책 또는 성명, 처리 시간 등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개인영상정보 처리 이력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영상정보 처리를 유도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책임 추적이 가능토록 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의료기기법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에서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이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 ②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26. 손해배상책임(안 제26조)

### 가. 제·개정 이유

-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나. 제·개정 내용

#### □ 손해배상 책임

- 개인영상정보는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에 비하여 특정 개인 식별성이 높으므로,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영상정보주체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문화함

\* 초상권, 명예권 등 일신전속적 권리를 모두 포함

- 다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이라는 보다 강화된 형태의 손해배상 제도가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본 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개인

정보 보호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을 규정

#### □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를  
포함하므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영상정보  
주체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반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대하여는 「민법」 상의 일반 원칙에 의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영상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  
영상정보처리자에게 전환시킴으로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영상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

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외국입법례

<외국 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44조 카메라 감시를 담당하는 자는 카메라 감시가 동 법을 위반하여 초래한 인적 보전의 손해 및 위반에 대해 감시 대상 당사자를 보상해야 한다.

44 §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ska ersätta den övervakade för skada och kränkning av den personliga integriteten som kameraövervakning i strid med denna lag har orsakat.

감시를 수행한 자가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입증할 경우 본 책임은 합당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Ersättningskyldigheten kan i den utsträckning det är skäligt jämkas, om den som har bedrivit övervakningen visar att felet inte berodde på honom eller henne.

27. 적용의 일부 제외(안 제27조)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 및 사적 자치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가치의 토대임

○ 그러나 개인영상정보 보호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다른 헌법적 가치들과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목적과 유형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을 일부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나. 제·개정 내용

### □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적용 제외(제1항)

-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 등 다른 헌법상 권리 또는 공공이익과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제외됨을 명시
  - 헌법상 권리(언론·종교·정당활동의 자유) 및 공공이익(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 이 법 적용을 제외
- 다만, 위 경우에도 금지행위, 필수 안전조치 등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 및 본조 제4항과의 관계에서도 타당함

#### <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사례 >

구분	내용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li> <li>• 국가주권, 국가안보,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위한 경우</li> </ul>
EU 「개인정보보호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하게 사적이고 가사목적의 활동을 위한 경우</li> <li>• 공공의 안전, 방위,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의 경우</li> <li>• 형사법 영역의 국가활동(수사 등)</li> <li>• 보도 목적, 문학적·예술적 창작활동이나 표현을 위한 경우</li> </ul>
독일 「연방개인정보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수집, 생산, 이용이 오직 개인적이거나 가족적인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경우(제3조제3항)</li> <li>• 법률의 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공공복리 및 공공안전침해 방지, 형사상·행정상 집행을 위한 경우(제14조제2항)</li> <li>• 계약목적, 정보주체의 중요한 법적 이익, 광고·시장조사·여론조사, 학문연구, 과학적 연구(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기타 방법이 없는 경우), 제3자의 법적 이익 또는 공익보호, 정치·철학·종교 또는 노동조합 목적(제28조)</li> </ul>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도 목적(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보도기관)</li> <li>• 저술활동 목적(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li> <li>• 학술연구 목적(대학 기타 학술연구 단체, 기관 및 구성원)</li> <li>• 종교활동 목적(종교단체)</li> <li>• 정치활동 목적(정치단체)</li> </ul>

구분	내용
<p>캐나다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가정적 목적, 언론·예술·문학적 목적(제4조제2항)</li> <li>• 법률 위반조사, 개인의 생명·건강·안전보호, 통계·학술조사, 공공이용이 가능하고 규정에서 정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제7조제2항)</li> <li>• 법정 변호사 및 사무 변호사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부채 회수의 목적, 법원의 필요, 법적 권한있는 정부기관의 요청(제7조제3항)</li> </ul>
<p>영국 「정보보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한 사적 목적(개인 자신, 가족, 가사 등)을 위한 경우</li> <li>•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li> <li>• 범죄 방지·수사·검거 및 조세와 관련된 활동의 경우</li> <li>• 다른 법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li> <li>• 공익을 위한 감시기관(공정거래 등)의 규제활동목적</li> <li>• 언론·예술·문학적 활동 목적의 경우</li> <li>• 연구·역사·통계 목적의 활동인 경우</li> <li>• 법령에 의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인 경우</li> <li>• 군대, 법률 소송, 법관 임명 및 훈장 수여 등</li> </ul>

□ 친목도모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경우 일부 규정 적용제외(제2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음
  - 대법원 판례(8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 운영의 경우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의 일환으로서 업무 목적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는 대부분 소규모 집단이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위험성이 크지 않은 만큼 일부 규정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친목도모 등의 경우에도 이 법 모든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 이용 금지, 금지행위, 필수 안전조치 등 규정은 준수해야 함

**< 천목 도모 또는 사적 목적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 표시)
- 제15조(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2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

**□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제외(제3항)**

-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이 법에 따른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현실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일부 적용을 제외함
  - 다만, 안내판 표시, 안전성 확보조치, 열람등 권리에 대한보장 등 필수적인 규정은 적용함

**< 소상공인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

-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15조(보호책임자의 지정),
- 제2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등 강구(제4항)**

-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다른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 등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
  - 제1항에 따라 제2장부터 제6장까지가 적용 제외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경우에도 업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취미나 사사로운 일상생활 영위 등 사적 목적의 영상정보 처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법률전문가 등)

## 라. 입법효과

-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 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일부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모색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외국입법례

### <외국 입법례>

#### □ 영국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 제36조 가정용 목적

개인이 오직 자신의 가족 또는 가사(여가목적 포함)를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2부 및 제3부의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6 Domestic purposes.

Personal data processed by an individual only for the purposes of that individual's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affairs (including recreational purposes) are exempt from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and the provisions of Parts II and III.

####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4조 법률(2014:1425).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소송절차법 27장이나 법률(2007:979)에 부합하는 비밀 감시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 Lagen gäller inte vid hemlig kameraövervakning enligt 27 kap. rättegångsbalken eller lagen (2007:979) om åtgärder för att förhindra vissa särskilt allvarliga brott. Lag (2014:1425).

제5조 극비 활동의 일환으로 실제 개인이 감시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의 카메라 감시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

하지 않는다.

5 § Lagen gäller inte vid kameraövervakning av en plats dit allmänheten inte har tillträde, om övervakningen bedrivs av en fysisk person som ett led i en verksamhet av rent privat natur.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3조. 이 법은 제2조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서 감시 및 감독의 목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 감시카메라
2. 안전 및 건강 보장, 회사의 자산 보호, 생산과정 관리, 근로자의 작업 감독을 목적으로 작업장에서 설치·운영되는 감시카메라

Art. 3. La présente loi est applicable à l'installation et à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en vue d'assurer la surveillance et le contrôle dans les lieux visés à l'article 2. La présente loi n'est pas applicable à l'installation et à l'utilisation :

1. de caméras de surveillance réglées par ou en vertu d'une législation particulière;
2. de caméras de surveillance sur le lieu de travail, destinées à garantir la sécurité et la santé, la protection des biens de l'entreprise, le contrôle du processus de production et le contrôle du travail du travailleur.

## 28. 영상정보처리기의 종합관리 등(안 제28조)

### 가. 제·개정 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제·개정 내용

## □ 종합관리 체계 구축 및 시책 마련(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해야 함

## □ 시범사업의 실시(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나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 비용지원, 지침·기술기준 수립 및 권고 등(제3항~제5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상의 안전성·효율성·경제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설치·운영 지침이나 기술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 또는 기술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영상을 차폐(遮蔽)하거나 흐릿하게 하는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제6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의 종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영상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산업계 등)

라. 입법효과

-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의 무분별한 운영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보험·보증 업무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철도안전법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외국입법례

<참고 입법례>

□ 영국 : 감시카메라 관리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5.1. 감시카메라 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내무장관이 2012 법안의 34조에 준하여 만든 법으로 명시된 약속이다.

위원회의 법적인 기능들로는 a) 본 규정에 대한 준수를 장려 b) 본 규정의 운영에 대한 검토 c) 본 규정에 관련된 조언 제시(이에 대한 변화나 위반 행위 포함)가 있다

5.1 The Surveillance Camera Commissioner, (the commissioner), is a statutory appointment made by the Home Secretary under Section 34 of the 2012 Act. The commissioner's statutory functions are: a) encouraging compliance with this code; b)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is code; and c) providing advice about this code (including changes to it or breaches of it).

29.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9조)

가. 제·개정 이유

-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

나. 제·개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에의 권한 위임·위탁(제1항)

-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가 등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 집행이 필요한 영역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수행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현장 조사를 통한 집행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또한, 개인영상정보 침해 신고 접수, 통합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과정 마련 및 시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대통령령 반영(안)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권한
  1.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또는 권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34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 ▶ 전문기관에 위탁할 권한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의 마련 및 시행
    -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또는 사생활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및 개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처리 및 상담과 관련한 사항만 해당한다)

**□ 재위임, 업무 처리결과 통보 및 경비출연에 관한 사항(제2항~제4항)**

-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함(제2항~제3항)

-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음(제3항~제4항)

####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5항)

-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수뢰,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동일한 벌칙 적용
  -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가 등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 집행이 필요한 영역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수행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현장 조사를 통한 집행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법률전문가 등)

#### 라. 입법효과

- '14년 기준으로 약 795만여대의 CCTV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설치 운영 중임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간의 협업체계 구축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 상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외국입법례

<참고 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16조 카메라 감시 허가 신청은 8조에 따라 감시가 수행되는 지역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메라 감시가 수행되는 경우, 허가 신청서는 주요 감시가 수행되는 지역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감시가 수행되는 지역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는 감시가 수행되는 여러 지역 행정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한다.

16 § En ansökan om tillstånd till kameraövervakning enligt 8 § ska göras skriftligen hos länsstyrelsen i det län där övervakningen ska ske.

Om kameraövervakning ska ske i flera län med en övervakningskamera som är uppsatt på eller i ett fordon, fartyg eller luftfartyg, ska ansökan om tillstånd göras hos länsstyrelsen i det län där övervakningen huvudsakligen ska ske. Om det inte går att avgöra i vilket län övervakningen huvudsakligen ska ske, ska ansökan göras hos länsstyrelsen i något av de berörda länen.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5조. ② 제1항의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결정은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로부터 긍정적 의견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Art. 5. § 2. La décision visée au § 1er est prise après avis positif du conseil communal de la commune où se situe le lieu. Le conseil communal rend son avis après avoir consulté préalablement le chef de corps de la zone de police où se situe le lieu.

### 30. 금지 행위(안 제30조)

#### 가. 제·개정 이유

-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등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함

#### 나. 제·개정 내용

##### □ 적용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의 금지행위(제59조) 의무대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인 것과 달리, 개인영상정보는 업무 목적 또는 사적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금지행위 의무 대상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함

##### □ 금지행위의 유형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제1호)
-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제2호)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무권한)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월권) 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제3호)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제4호)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된 개인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공하거나 활용하는 행위가 이 법의 금지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업무 목적 외에도 개인의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사적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금지행위 의무자를 업무 목적 처리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음(법률전문가 등)

**라. 입법효과**

- 개인의 사생활 등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상정보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외국입법례

<참고 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37조 카메라 감시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통제하는 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특정 개인의 상황에 관하여 확인한 정보를 허가 없이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공공활동에서는 정보의 공개 접근 및 기밀유지법(2009:400)의 규정을 적용한다.

37 § Den som tar befattning med en uppgift som har inhämtats genom kameraövervakning får inte obehörigen röja eller utnyttja det som han eller hon på detta sätt har fått veta om någon enskilds personliga förhållanden. I det allmännas verksamhet ska i stället bestämmelserna i offentlighets- och sekretesslagen (2009:400) tillämpas.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8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몰래 카메라의 이용은 금지된다. 사전에 정보주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카메라의 사용은 금지된다. 사전승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감시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림문자가 표시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2. 제7조의 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동 감시카메라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작동되고 있는 공공 또는 제한된 장소에 있는 경우, 차량, 선박 또는 표시가 없는 항공기에 이동 감시카메라를 장착하는 경우, 카메라를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야 한다.

Art. 8. Toute utilisation cachée de caméras de surveillance est interdite.

Est considérée comme utilisation cachée, toute 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qui n'a pas été autorisée au préalable par la personne filmée. ...

Vaut autorisation préalable :

1. le fait de pénétrer dans un lieu où un pictogramme signale l'exi

stence d'une surveillance par caméra;

2. la présence dans un lieu ouvert ou dans un lieu fermé accessible au public où des caméras de surveillance mobiles sont utilisées de manière visible comme visé à l'article 7/1.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mobiles, montées à bord de véhicules, de navires ou d'aéronefs non banalisés, sont réputées être utilisées de manière visible.

제10조.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상·종교·정치·노동조합의 견해, 윤리·사회적 기원, 성 또는 건강에 관한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해할 목적으로 영상을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Art. 10. Les caméras de surveillance ne peuvent ni fournir des images qui portent atteinte à l'intimité d'une personne, ni viser à recueillir d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opinions philosophiques, religieuses, politiques ou syndicales, à l'origine ethnique ou sociale, à la vie sexuelle ou à l'état de santé.

## 31. 침해 사실의 신고 등(안 제31조)

### 가. 제·개정 이유

- 실질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로 인해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침해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나. 제·개정 내용

-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 업무 처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체계\*를 통해 개인 영상정보에 관한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소를 최소화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제도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함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에서 신고센터 운영(전화번호 국번없이 118번)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개인영상정보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건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건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건을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2.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안 제32조)

### 가. 제·개정 이유

- 이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위법 혐의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

### 나. 제·개정 내용

□ 법 위반 혐의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필요시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전산시설 또는 전산자료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나 검사한 장부 또는 서류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함

**□ 법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의 관계**

- 법 제2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범위반 사실의 발견이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통합관계센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본 조는 법 위반 혐의나 관련 민원, 허가, 시정명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행정적 처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20조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상이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민원 접수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원활한 시행과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영상 정보 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

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외국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43조 제39조 및 40조에 언급되는 감독기관은 감독을 위해 관제실 및 감시센터의 기타 구역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경찰청은 본 기관이 접근권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하는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카메라 감시를 담당하는 자, 또는 감시를 대행하는 자는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인계한다.

감독 기관은 저장 영상이나 음성 자료에 접근하여 이를 검토할 권

리가 있다.

43 § De tillsynsmyndigheter som avses i 39 och 40 §§ har rätt att för tillsynen få tillträde till kontrollrum och andra delar av en övervakningsanläggning. Polismyndigheten är skyldig att på begäran lämna den handräckning som dessa myndigheter behöver för att få tillträde.

Den som bedriver kameraövervakning, eller den som för någon annans räkning har hand om övervakningen, ska lämna de upplysningar som tillsynsmyndigheten begär.

Tillsynsmyndigheten har rätt att få tillgång till och att granska bevarat bild- eller ljudmaterial.

### 33. 시정조치 등(안 제33조)

#### 가. 제 · 개정 이유

-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가 이미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력의 효율을 기함

#### 나. 제 · 개정 내용

##### □ 시정명령(제1항)

-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가 이미 국민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 중인 반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법 집행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발생 우려
- 이에,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1회에 한해 과태료 처분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명령을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부과대상 과태료와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병과하여 부과함

**<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 요건 >**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할 것
2.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3.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것

**□ 시정권고(제2항)**

- 법 위반에는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임. 다만, 행정청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최근 법제 심사 방향을 고려할 때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음(법률전문가 등)

**라. 입법효과**

- 영상정보처리기가 이미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처벌 위주 집행 보다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 중심의 집행을 통해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 법원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신고서류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전파법 시행령

제119조(시정지시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 34. 고발 및 징계권고(안 제34조)

#### 가. 제·개정 이유

- 이 법 집행 과정에서 형사벌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알게 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나. 제·개정 내용

□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제1항)

- 행정자치부장관이 민원처리, 실태조사 등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벌이 적용되는 법규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 이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함

□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징계권고(제2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또는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다른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책임자(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신속한 개선과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함

- 징계 권고를 받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벌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련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5. 벌칙, 양벌규정, 몰수·추징(안 제35조~제37조)

### 가. 제·개정 이유

-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벌, 양벌책임 또는 몰수·추징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제·개정 내용

#### □ 벌칙 규정의 기본방향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법익의 중요성,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및 영상정보주체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형사벌을 부과토록 함(제35조)
- 양벌규정 및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자발적 법 준수 노력을 촉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노린 위법 유인(誘因)을 제거(제36조~제37조)
  -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등에 대하여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兩罰) 제도를 도입
  - 또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벌칙의 주요내용(제35조)

-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등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 제재(제1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 목적외 용도로 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한 자 등에 대하여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제재(제2항)
-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훼손되도록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항)

<벌칙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와 제재이유>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재이유
제1항	1.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국민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강력 제재 필요
	2. 통합관제센터 종사자로서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당초 설치·운영 목적과 달리 관제한 자		▶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 통제하는 기관으로 종사자의 엄격한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 ▶ 통합관제센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강력 제재 필요

	<p>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및 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p>		<p>▶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누설 또는 제3자 제공은 국민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강력 제재 필요</p>
	<p>4.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p>		<p>▶ 정당한 권한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유출할 경우는 중요 증거 자료 멸실 또는 목적외 제3자 제공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강력 제재 필요</p>
제2항	<p>1. 영상정보처리기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운영한 자 또는 녹음을 한 자</p>	<p>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p>	<p>▶ 법률상 허용된 경우가 아님에도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를 목적 외 용도로 운영하거나 녹음을 한 경우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행위이므로 엄격한 제재 필요</p>
	<p>2.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한 자 및 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p>		<p>▶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 영상정보 취득 및 처리 등의 기만행위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제재 필요</p>
	<p>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개인영상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공 활용한 자</p>		<p>▶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무력화하는 행위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제재 필요</p>
제3항	<p>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개인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도록 한 자</p>	<p>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p>	<p>▶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유출 등이 된 경우 엄격한 제재 필요</p>

## □ 양벌규정(제36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형사벌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법인 등에 대하여 동일 수준의 벌금을 부과함
  - 이는 임직원, 대리인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당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임직원, 대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다만,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제재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평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 □ 몰수·추징(제37조)

- 이 법에 따라 형사벌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몰수·추징 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법 위반행위 발생시 국가가 해당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유인(誘因)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것임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라. 입법효과

-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양벌책임, 몰수·추징 등의 법적 제재사항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법준수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함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 <참고 입법례>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

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 10. (생략)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자
- 1의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8. (생략)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1호·제1호의2·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외국입법례

<참고 입법례>

□ 스웨덴 : 카메라 감시법(Kameraövervakningslag)

제45조 고의나 과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벌금 또는 일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기밀유지에 관한 제8조,
2. 보고 의무에 관한 제12조~15조
3. 고지 의무에 관한 제25조
4. 저장기간에 관한 제32조 첫 번째 단락
5. 제3국 전송에 관한 제34조

45 § Till böter eller fängelse i högst ett år döms den som uppsåtligt eller av oaktsamhet bryter mot någon av bestämmelserna i

1. 8 § om tillståndsplikt,
2. 12-15 §§ om anmälningsplikt,
3. 25 § om upplysningsplikt,
4. 32 § första stycket om bevarandetid, och
5. 34 § om överföring till tredjeland.

아울러 이는 제19조 또는 20조를 입증하기 위해 전달된 결정에 포함되는 조건에 불복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Detsamma gäller den som bryter mot villkor i beslut som har meddelats med stöd av 19 eller 20 §.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I ringa fall ska det inte dömas till ansvar.

벌금이 적용되는 행위는 배상하지 않는다.

För en gärning som omfattas av ett vitesföreläggande ska det inte dömas till ansvar.

제46조 동 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감시 장비는 합당하다고 간주될 경우 몰수를 선언한다.

46 § Övervakningsutrustning som har använts vid brott enligt denna lag ska förklaras förverkad, om det inte är oskäligt.

□ 호주 : 감시장비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7)

8. 동의 없는 광학적 감시 장치 설치, 사용 및 유지

(1) 여하한 자는 장치의 설치, 사용 또는 유지가 다음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 특정 활동을 시각적으로 녹화하거나 관찰하기 위해서 부지나 또는 차량이나 기타 사물에 광학 감시 장치를 고의적으로 설치, 사용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

(a) 부지나 차량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부지나 차량에 들어가는 행위, 또는

(b) 차량이나 사물의 합법적 보유자나 통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차량이나 기타 사물에 개입하는 행위

8 Installation, use and maintenance of optical surveillance devices without consent

(1) A person must not knowingly install, use or maintain an optical surveillance device on or within premises or a vehicle or on any other object, to record visually or observe the carrying on of an activity if the installation, use or maintenance of the device involves:

(a) entry onto or into the premises or vehicle without the express or implied consent of the owner or occupier of the premises or vehicle, or

(b) interference with the vehicle or other object without the express or implied consent of the person having lawful possession or lawful control of the vehicle or object.

최대 페널티: 500 페널티 유닛 (법인의 경우)이나 100 페널티 유닛이나 징역 5년, 또는 이 둘 모두 (기타 경우)

Maximum penalty: 500 penalty units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or 100 penalty units or 5 years imprisonment, or both (in any other case).

## 36. 과태료(안 제38조)

### 가. 제·개정 이유

- 이 법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제·개정 내용

#### □ 과태료 규정의 기본방향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보호 법익의 중요성,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와 회복 가능성, 영상정보주체의 인격권 또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부과·징수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제29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범위에 한함)가 시행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전반을 규율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 □ 과태료의 주요내용(제1항~제3항)

- 범죄예방 등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의 절차에 있어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내판 미부착 등 개인영상정보 수집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위탁시 관련 절차를 위반하거나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와 제재이유>**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재이유
제1항	1. 범죄예방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4.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기준을 위반한 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규제가 필요하므로 엄격한 제재 필요  ▶ 법상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엄격한 제재 필요
제2항	1.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에 있어서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필수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제재 필요

	<p>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열람등요구를 한 자</p> <p>4. 법에서 정한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열람, 출처확인, 사본 교부를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p> <p>5. 영상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보관 중인 영상을 당해 영상정보주체가 삭제 요구한 경우로서 그 영상 삭제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자</p> <p>6. 행정자치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개인영상정보 보호는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재 필요</p> <p>▶개인영상정보처리자를 기만하여 결과적으로 영상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 필요</p> <p>▶ 영상정보주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 필요</p> <p>▶개인영상정보 침해 예방과 피해 확산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시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필요</p>
제3항	<p>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p> <p>2. 적법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한 자</p> <p>3.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p> <p>4. 적법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자</p> <p>5. 개인영상정보 처리 위탁시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p> <p>6. 개인영상정보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7. 관계 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p> <p>8.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1천만원 이하 과태료	<p>▶ 운영·관리 방침, 위탁시 절차 준수, 수집사실 표시, 기타 공개의무 등 단순 절차사항 위반과 출입·검사 방해 등은 법 집행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재 필요</p>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위임(제4항)

- ‘14년말 기준으로 총 795만여대의 영상정보처리기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위임한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발생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재사항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법 준수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모든 영상정보처리기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참고입법례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자
- 7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의2. 제22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의2.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 2의3.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2의4.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삭제 <2014.5.28.>
- 6의2. ~ 1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 1의2. 제25조제7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6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 2의5. 제25조제6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때에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3. ~ 24.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⑤ ~ ⑦ (생략)

○ 외국입법례

<참고 입법례>

□ 벨기에 : 감시카메라 설치 및 사용규제법(Loi réglant l'installation et l'utilisation de caméras de surveillance. 2007)

제13조. 법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50유로에서 1,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영상을 소지한 자가 법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여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에 처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위반한 자는 25유로에서 1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위반하여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형

에 처한다.

Art. 13. Quiconque enfreint les articles 9 et 10 est puni d'une amende de deux cent cinquante euros à mille euros. Est puni d'une amende identique, quiconque dispose d'une image dont il peut raisonnablement supposer qu'elle a été obtenue en violation des articles 9 et 10. Quiconque enfreint les articles 5, 6, 7 , 7/1, 7/2 et 8 est puni d'une amende de vingt-cinq euros à cent euros. Est puni d'une amende identique, quiconque dispose d'une image dont il peut raisonnablement supposer qu'elle a été obtenue en violation de ces mêmes articles.